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92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8. 12. 4. 제29324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9조제4항)

#### 나. 상위법령 불일치 및 미위임 규정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 정비(안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22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석의 시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안 제27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공공청사에 관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 (안 제4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나,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90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 변경내용의 근거규정을 관련 조례 조문에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제4항, 안 제25조제3항제3호·제4항제5호·제4항제8호, 제29조제1항제3호바목·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45조, 제89조제3항, 제90조의2, 제9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35조, 제8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년 10. 4. ~ 10. 24.)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제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

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조제2조나목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를 “재개발사  
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  
개발사업”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  
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신설 2007. 5. 9, 개정 2008.4.7, 2009.7.15, 2013.7.3, 2014.1.29)

⑤·⑥ (생략)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서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지원 시설

6.·7. (생략)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 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7.5.9, 개정 2013.7.3, 2014.1.29)

9. ~ 11. (생략)

⑤·⑥ (생략)

제27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

-----  
-----  
-----  
-----  
-----  
-----  
-----  
-----  
-----  
-----  
-----

6.·7. (현행과 같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9. ~ 11.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



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3.(생 략)

③ (생 략)

<신 설>

-----  
-----  
-----.

1~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50퍼센  
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  
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  
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  
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  
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  
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  
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  
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  
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  
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조나목의 주택 재개

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  
자율 등) ① -----  
-----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  
-----  
----- 행정안전부장  
관-----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

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  
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  
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사업 -----

-----재개발사업의-----

③ -----

----- 행정안전부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5. -----  
----- 재개발사업

한한다)를 주택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  
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게 매각하는 때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  
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  
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재개발사업-----

-----같은 법 제129조-----

④-----

-----행정안전부장관-----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행정안전부장관-----

-----<삭 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5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  
-----.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행정안전부장관-----  
-----.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p>③·④ (생략)</p> <p>제9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p>	<p><u>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u>행정안전부장관</u>-----.</p> <p>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 -----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 -----.</p>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호

3. 미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조문 본문의 변경 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재무과 과장 최삼범

(담당 : 행정7급 김성훈 / ☎ 2600-6207)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 신설 및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50%) 규정 신설
- 상위법령 불일치 및 미위임 규정 정비
- 상위법령 근거조문 변경사항 반영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43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재무과	통보(조치)일		2019. 10.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45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김성훈	전화번호 02-2600-62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재무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9. 7. 2.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9년 10월 14일</p> <p><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p> <p>(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재무과장 귀하</p>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